「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9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9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이 포함된 신청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신청서식을 일부 개정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 화장실 신고서”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고, 서식에 명시한 조례 제명을 법령 제명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없음」

8. 기타 사항:「없음」